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조건부 동의 근거 마련〉

■ 김남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213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조건부 동의	2
2. 조건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요청	4
※ 참고자료 : 관계 법령	7

I. 제안경위

1. 발의자 : 김남준 의원 등 11인
2. 발의일 : 2026. 7. 29.
3. 회부일 : 2026.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군사시설이 실제 이전되고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연계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의 기간이 늘어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조건부 동의

□ 현행법은 보호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등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¹⁾

이 과정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부동의로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경우²⁾ 관련된 허가등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시, 그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건축물의 신축 등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 협의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하 생략)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13조의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조건부 동의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관하여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의에 동의할 수 있다.</u> <u>② (생략)</u> <u>③ (생략)</u>

□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완료 후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미리 마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호구역이 해제된 직후 곧바로 착공하는 것이 가능해져 개발사업의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사업기간의 단축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장기간 제한되었던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정상화되어 군사시설의 이전과 지역 개발이 조화롭게 추진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조건부 동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재량 사항이고 현행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³⁾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조건부 동의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협의 절차가 달라지기 어려워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도 관계기관 협의 시 부대이전 등을 고려하여 ‘부대이전 완료 후 착공’ 등의 조건을 부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므로, 법률에 ‘조건부 동의’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조건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요청

□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건을 위반하여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도록 허가등을 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2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3조의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조건부 동의 등) ① (생략)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제11조제2항 (참고자료 참고)

현행	개정안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제1항의 조건에 위반하여 해당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도록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동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건부 동의는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협의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그 조건이 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조건부 동의를 도입하면서 그 조건이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의 사후적 통제수단을 함께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아울러 현행법 제13조제10항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허가등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원상회복 요청을 규정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문의 구성과 내용이 유사하여 현행 제도와
와의 정합성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⁴⁾

- 다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야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원상회복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를 신뢰하여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 등 선의의
제3자에게도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군사적 보호의 필요성도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09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⑩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관계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성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③ (생 략)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도한 물자 및 장비

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 ⑨ (생략)

⑩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생략)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군사시설사업

2.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

3.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중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군사시설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협의) ②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작전성 검토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별표5와 같으며**, 군사작전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합참의장이 따로 정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5] 작전성 검토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I. 일반사항

1. 작전성 검토의 정의

‘작전성 검토’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요청 시 관할(관리)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전면전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평시 경계임무, 군사훈련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해소 대책을 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는 동의·부동의·조건부 동의로 분류된다.**

2. ‘작전성 검토’ 기본방향

가. (생략)

나. 군사작전(전면전 대비작전, 국지도발 대비작전, 평시 경계임무, 군사훈련 등)의 시행 여건을 보장한다.

1)~2) (생략)

3) 부대노출로 인한 군사보안의 이유로 협의 불응 또는 조건부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다. 주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려하고, 군사 작전에 반드시 필요하여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작전지역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최소의 범위로 통제하여야 하며, 이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요청 시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작전 저해요소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동의 처리 한다.

(이하 생략)

II. 기지 및 시설별 작전성 검토 기준

1. 군사기지별 검토기준

가~나. (생략)

다. 항공작전기지

가) (생략)

나)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 및 비행안전 등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2) 임시구조물로써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군 작전상 필요하여 부대로부터 공사 중지 또는 철거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이행하겠다는 등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

라·바. 방공기지 및 레이더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 등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적절한 대안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대안 이행 관련 합의각서를 체결할 경우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